

의안번호

제715호

-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9. 2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9. 7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9. 17(목)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 · 폐지에 따라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손괴자부담금 제도의 폐지로 도로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도로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(안 제1조)
- 나. 도로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
 - 복구보험증권 제출(안 제3조제2항)
 - 원인자 확인의무(안 제8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

4. 근거법규 : 「도로법」 제2조, 제7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물 손괴자 부담

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- 본 조례 제1조(목적)에서 인용한 도로법 “제64조 및 제67조”가 도로법 “제76조”로 변경되어 상위법 인용법령 개정사항과
 - 본 조문 중 “도로손괴자 부담금”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 손괴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도로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하던 제도를 손괴자가 직접 복구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도로법 “제67조(손괴자 부담금)”조항이 삭제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.
 - 제2조(정의)의 인용 법령인 도로법 “제2조 내지 제4조”를 도로법 “제2조”로 하고
 - 제3조제2항의 조문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인자가 직접 시공토록 함에 따른 개정사항이며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도로법

제2조 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도로"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[제8조](#)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.
 2. "국도대체우회도로"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(市)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 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.
 3. "국가지원지방도"란 지방도(地方道) 중 중요 도시, 공항, 항만, 산업단지, 주요 도서(島嶼),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(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·광역시도·시도·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.
 4. "도로의 부속물"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도로 원표(元標), 이정표, 수선 담당 구역표,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
 - 나. 도로의 방호(防護) 울타리,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
 - 다. 도로에 연접(련접)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
 - 라.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,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
 - 마. 그 밖에 [대통령령으로 정한](#) 것
 5. "타공작물"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, 언제(堰堤), 호안(護岸),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, 횡단도로, 그 밖에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공작물을 말한다.
-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, 교량, 도선장(渡船場),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-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, 노선명, 기점, 종점, 중요 경과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6조 (원인자 부담금)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